

# 예산총칙

202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            | 564,702,720 | 16,941,082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 | 507,899,381 | 15,236,981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 | 56,803,339  | 1,704,100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56,803,339  | 1,704,100  |
|      | 상수도 특별회계         | 15,197,752  | 455,933    |
|      | 수질개선 특별회계        | 31,001,884  | 930,057 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    | 419,934     | 12,598     |
|      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| 844,030     | 25,321     |
|      |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| 6,003,633   | 180,109    |
|      | 주차장 특별회계         | 816,000     | 24,480     |
|      |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    | 2,520,106   | 75,603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『세입·세출 예산』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『해당없음』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『해당없음』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『해당없음』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762,764천원(일반예비비 1,718,659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1,044,105천원)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『지방재정법』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